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16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8.

발 의 자 : 임종득 · 김태규 · 윤한홍
이상휘 · 박성훈 · 김정재
김용태 · 서천호 · 김승수
윤상현 · 김상훈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의사·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공중보건 의사·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,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공중보건 의사·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복무 부담이 크고, 이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. 또한 이 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복무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공중보건 의사·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한편,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

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34조 및 제34조의2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1168호), 「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1170호) 및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116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2항 중 “3년간”을 “30개월간”으로 한다.

제34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34조의7제2항 중 “3년간”을 “30개월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중보건 의사·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제2항, 제34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편입되는 공중보건 의사·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복무 중인 공중보건 의사·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공중방역수

의사의 복무기간에 관한 특례) 이 법 시행 이전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이 법의 개정규정과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단축이 되도록 하되, 편입 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4조(공중보건 의사 등의 편입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 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<u>3</u> 년간 복무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. ③ · ④ (생략)	제34조(공중보건 의사 등의 편입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3 <u>0개월간</u> ----- ----- -----.
제34조의2(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) ① ~ ③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34조의2(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
④ ~ ⑦ (생략)	⑤ ~ ⑧ (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)
제34조의7(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	제34조의7(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

에 <u>3년간</u> 복무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지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. ③ · ④ (생 략)	--- <u>30개월간</u> ----- ----- -----.
--	---